## 예 산 총 칙

## 2017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 차 입 한 도 액
	합 계	378,677,794	11,360,334
일반회계		315,960,719	9,478,822
특별회계		62,717,075	1,881,512
	기타특별회계	62,717,075	1,881,512
	상수도특별회계	10,143,489	304,305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621,624	18,649
	자활 및 생활 안 정기 금 특별 회계	2,181,712	65,451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644,125	19,324
	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	13,728,667	411,860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	401,000	12,030
	청사건립특별회계	34,996,458	1,049,894

- 제 2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-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- 제 4조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 및 "계속비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-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,966,118천원으로 한다.
- 제 6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,6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7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  - 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  - 2. 직무수행경비
  - 3. 법정의무부담금(연금부담금, 국민건강보험금, 연금지급금, 사회복무요원보상금)
  - 4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
  - 5. 재해대책 및 복구비
- 제 8 조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, 교부세, 조정교부금,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